

의안번호	2214759
의 퇴 인	조경태 의원
회 답 일	2026. 4. 7.
추계번호	25B658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u>비용의 지원</u>)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선충병 구제·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2(<u>비용의 지원</u>)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¹⁾에 따른 벌채·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²⁾에 따른 경우를 제외)을 받은 임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피해 규모 등을 기초로, 방제 중요지역을 고려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보조금을 배정하고 있음

1)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2) 제13조(단속 등) ⑤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표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사업 현황: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 내용	2022	2023	2024	2025	2026
산림병해충 방제 (2335-300)	소나무재선 충병 방제	피해목제거	10,900	38,263	26,731	24,538	24,538
		피해우려목 사전제거	4,986	11,361	11,361	10,761	10,761
		예방나무주사	9,010	12,753	12,753	12,753	12,753
		약제살포 (지상방제 등)	1,873	1,873	980	980	980
		훈증처리목 수집	8,764	14,314	14,314	12,914	12,914
		친환경(폐로몬) 방제	1,125	1,125	1,125	1,125	1,125
		예찰시스템 현대화	5,788	5,788	5,788	5,788	5,788
		복합예방방제	4,500	4,500	4,500	4,500	4,500
		수종전환방제	—	—	—	24,500	24,500
		현장진단키트	—	396	396	360	36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 개정안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선충병 구제·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재선충병 구제·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이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지원 단가, 향후 재선충병 피해 정도 및 재정자립도 반영으로 인한 방제 가능 물량의 증감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관련 자료 등이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